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안	2004
번호	- 29

제출년월일 : 2004. 6.

제 출 자 : 김 제 시 장

1. 제정이유

주민투표법이 2004. 1. 19일 법률 제07124호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요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동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 부여함 (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안 제4조)
 -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20세이상 주민수) 총수의 1/9로 정함 (안 제5조)
-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하고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의 성명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명요청방식을 규정함(안 제6조)
- 청구인대표자와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함 (안 제7조)
-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함 (안 제11조)
-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청구요건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 (안 제12조)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부하고, 열람기간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13조)
- 투표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음 (안 제14조)
-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규정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 주민투표법

○ 주민투표표준조례안 [도 자치행정과-4804(2004. 4. 20)]

○ 입법예고(2004. 5. 28 ~ 6. 17) : 특기사항 없음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김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심의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⑪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⑫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 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2호서식 】

청 구 인 대 표 자 증 명 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 제 시 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김제시주민투표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김 제 시 장 (인)</p>			
<p>※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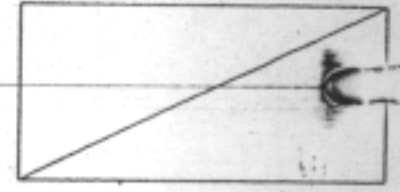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자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8호서식 】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 . . (제 회)

의 결 사 항

의 안 명

제 출 자	
제 출 연 월 일	. . .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 별지 제10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결서

의안 번호	의안명	의결내용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김제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직위</th> <th style="width: 15%;">성명</th> <th style="width: 15%;">서명</th> <th style="width: 55%;">의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th> </tr> </thead> <tbody> <tr> <td>의장</td> <td>부시장</td> <td> </td> <td> </td> </tr> <tr> <td>부의장</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rowspan="5">위원</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직위	성명	서명	의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의장	부시장			부의장				위원															
직위	성명	서명	의견 (의견 있을 경우 기재)																											
의장	부시장																													
부의장																														
위원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